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0054
----------	-------

제안연월일 : 2017. 11.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전체회의 상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07호	염동열의원	'16.9.28.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16.11.16.)
	제6088호	조승래의원	'17.3.9.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17.9.18.)
	제6963호	이동섭의원	'17.5.19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17.9.18.)
	제9345호	김병욱의원	'17.9.13.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17.9.18.)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2017.9.26.)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9.28.)는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공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여부가 학칙에 따라 다른 상황임.

이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계획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3항).

나.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신설)

마.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일반대학(원)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 사.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 충족 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0개년”을 “5개년”으로, “2년마다”를 “매년”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다른”을 “국내외의 다른”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선발방법”을 “선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을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을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34조제8항”을 “제34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교육재정) ①·② (생 략)</p> <p>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u>10개년</u>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u>2년마다</u>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u> 한다.</p> <p><u><신 설></u></p> <p>④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교육재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5개년</u>----- -----<u>매년</u>-----</p> <p><u>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u>-----.</p>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u>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u>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회(이하 “대학평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u></p>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
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
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

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22조(수업 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학평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누구든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생략)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

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⑦ 제5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④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⑤·⑥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

②·③ (현행과 같음)